

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※ 신고인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,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3 일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	
	영업의 종류	영업신고번호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
영업자 성명 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)			
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			
영업소의 소재지			
영업소 면적			
변경사유			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뒤쪽 참조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신고인 제출서류	1.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. 영업신고증 나.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·제조·가공·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. 영업신고증 나.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소재지 변경: 20,000원 소재지 외 변경: 9,000원 (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이용계획정보 2. 건축물대장	

유의사항

-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
 - 영업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)
 -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
 - 영업소의 소재지
 - 영업소의 면적
-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,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처리절차

